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68 발의연월일: 2022. 7. 15.

발 의 자:김선교·김상훈·강기윤

박성민 • 태영호 • 구자근

이종배 · 홍문표 · 박대수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 지정에 있어서 국·공립학교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기술하지 않아 국·공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국·공립학교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여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국·공립학교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현행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법률에 국·공립학교가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사목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	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사. 「초·중등교육법」 제3</u>
	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